

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(양주시) 공고

양주시와 경기도는 관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「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(양주시)」을 추진합니다. 이에 따라 양주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. 6. 2.

(재)경기테크노파크원장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중소 제조기업 현장에 적합한 '기초' 단계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

□ 지원개요

- 지원조건

지원유형	지원대상	최대 지원금액	지원비율	지원규모 및 기간
스마트공장 '기초' 구축	양주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('23~'24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'유형1~4' 수혜기업 지원 불가)	5천만원 (도50%+군50%)	총 사업비의 70% 이내	2개 기업(과제) / 5개월 내외 (협약일로부터 '25년 11월 30일까지)

- 지원내용 : 스마트공장 '기초' 단계 구축을 위한 설비 및 솔루션

구분	세부 지원내용
설비	• 스마트공장과 연결되는 자동화 장비 및 제어기, 센서, 비전 시스템 등 지원 ※ 단, 자동화 장비는 생산 데이터 생성 및 활용이 가능해야 하며, 스마트공장 솔루션과 연동이 필수
솔루션	• 제품 설계 개선,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소프트웨어 지원 ※ 예 : 생산공정관리시스템(POP/MES), 제품수명주기관리시스템(PLM), 기업자원관리시스템(ERP) 등

○ 컨설팅 지원 : 전문·사후컨설팅 (선정·완료 기업 의무 지원, 전액 무료)

구분	지원 대상 및 내용
전문컨설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선정기업 • (내용) 과제 진행 중 컨설팅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적정 스마트공장 구현, 과제 진행사항 점검, 공급사 계약관리, 납품검수, 구축과정 중 애로해결 지원 등
사후컨설팅 (차년도 지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완료기업 (2026년 예정) • (내용) 구축 시스템 활용 점검 및 안정화, 고도화 구축 계획수립 지원 등

□ 공통 지원조건

- (신청접수)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으로 신청 가능하며,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 (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)를 통해 신청 가능
 - 구축장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주소지와 동일해야 하며, 모든 설비 및 솔루션은 구축장 내에 구축하여야 함
 - 경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-25호('25.2.14.) 및 제2025-66호('25.4.7.)에 해당하는 '유형2-1(특수목적)', '유형2-2(로봇기반 디지털제조)'에 선정된 기업은, 본 사업(양주시 '기초' 구축)에 신청할 수 없음
 - 도입기업의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10% 이내에서 책정 가능하며, 전액 현물로 반영해야 함
- (지원 제외대상)
 - 휴·폐업중인 기업,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,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,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 -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
 - 동일 과제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
- (중복지원 불가) 신청기업은 정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(단, 지원 내용이 다를 경우 신청 가능)
 -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,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라도 '지원대상 제외', '협약 해약 및 지원금 환수' 조치할 수 있으며, 향후 사업 참여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- (교육이수) 본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·공급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“디지털 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 교육”을 이수해야 함
 - 도입·공급기업 대표자 및 임원, 실무자 각 1개 과정 이상
 - ※ 교육 세부내용은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예정

2.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, 유의사항

□ 지원절차

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- 평가방식 :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로 진행하며, 신청과제가 지원목표의 3배수 이하인 경우, 서면평가는 생략함

□ 평가기준

○ 서면평가

구 분	항 목	배점
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및 목적(30)	-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및 목적	10
	- 스마트공장 장기적 비전 및 <u>구축 의지*</u>	20
구축 방향, 단계적 구축 계획(30)	- 스마트공장 구축 방향	15
	- 구축 방향에 따른 단계적 구축 계획	15
금회 구축 세부계획 (30)	- 구축 희망 내용의 체계성	15
	- 구축 기간, 참여인력, 사업비의 적정성	15
사업의 파급효과 (10)	-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현장 개선 효과	5
	- 제조경쟁력 향상 효과(품질, 생산 납기 등)	5
합 계		100

○ 발표평가

구 분	항 목	배점
기업 역량 및 스마트공장 구축 의지(40)	- 기업의 안정성: 종업원 수, 매출액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가?	10
	- 스마트공장 구축 의지*: 도입기업의 자부담 비율, 교육 수료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스마트공장 구축 의지가 강한가?	20
	- 공급기업의 전문성: 공급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경험이 풍부하고, 관련 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가?	10
사업비 구성의 적절성(10)	- 예산 적정성: 구축하려는 솔루션과 도입 설비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가?	10
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(40)	- 데이터 수집 계획의 명확성: 도입기업의 제조공정을 분석하여, 각 공정별 수집해야 할 데이터 종류와 수집 방법(자동, 반자동, 수동)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?	15
	- 솔루션 기능의 적합성: 도입하려는 솔루션이 기업의 업종과 스마트공장 목표 수준에 맞게 적절히 구성되었는가?	15
	- 투입 인력의 적정성: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, 역할을 적절히 분배하였는가?	10
사업의 파급효과 (10)	- 현장 개선 효과: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해 작업 환경 및 운영 방식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가?	5
	- 제조 경쟁력 강화 효과: 품질 향상, 생산성 증가, 납기 단축 등 스마트공장 도입이 제조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?	5
합 계		100

□ 가점 및 감점, 협약 대상 제외 기준

○ (가점) 신청기업이 아래 항목 해당 시, 최대 5점 적용

항목	가점
◦ 5인 이하 기업	3
◦ 여성기업	3
◦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	3
◦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기업	1

○ (협약 대상 제외) 현장 확인 결과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'부적합'으로 확인될 경우, 협약 대상에서 제외

점검 항목 및 확인 사항		확인여부
사업계획서 대조·확인	◦ 제조공장의 정상 운영 여부 (휴업 또는 폐업 여부 확인)	적/부
	◦ 사업계획서와 현장 공정·설비의 일치 여부	적/부
	◦ 기존 보유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	적/부

□ 기타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 및 계획서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,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, 환수 및 제재할 수 있음
- 지원예산 추가확보 시 별도 공고 없이 본 공고를 통해 접수한 기업 중 후보과제를 대상으로 추가지원 가능
- 지원기업은 과제 완료 후, 수혜 내용, 성과 및 효과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, 경기TP가 실시하는 각종 만족도, 성과조사, 우수 지원사례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

3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기간 및 제출서류

- 접수기간 : 공고일 ~ 6월 19일(목) 18:00까지
-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
필수	▪ ('붙임'의 [별지1]) 사업신청서 1부
	▪ ('붙임'의 [별지2]) 사업계획서 1부
	▪ ('붙임'의 [별지3]) 사업비 산출내역서
	▪ ('붙임'의 [별지4]) 도입·공급기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및 개인정보 동의서
	▪ ('붙임'의 [별지5]) 참여 협약서
	▪ 도입기업 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* 종된사업장은 "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" 추가 제출 * 홈택스(www.hometax.go.kr)- 민원증명-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
해당시	▪ 도입기업 의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 또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*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(http://total.kcomwel.or.kr) *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https://www.4insure.or.kr)에서 발급
	▪ 우대가점 증빙서류 (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서,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공문, 여성기업 확인서)

□ 신청방법

-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(<https://pms.gtp.or.kr>)
 - 홈페이지(www.gtp.or.kr) ‘사업공고’의 해당 공고문 ‘신청하기’ 클릭
 - 회원가입 후 기업현황 작성 → 신청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
 -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량 증가로 인해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~3일 전까지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
- 문의처 (경기테크노파크 경기스마트제조혁신센터)
 - 031-500-3655 grkim01@gtp.or.kr

붙임 신청 서식 각 1부. 끝.